건설 현장 일용근로자와 관련한 비위 사례와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 수행자는 업무 수행시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비위 사례 개요

- 국세청에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검토하던 중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사용된 사실을 파악 후 회사로 확인자료를 요청함.
- 건설 현장에서 사용한 일용근로자임을 확인함.
- 해당 현장 확인한 결과 현장 일용근로자의 근무일수가 월 7 일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나,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7 일이 넘는 근무일수는 다른 일용근로자(사망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근무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함.

2. 위반 내용

가. 소득세법 제 81 조의 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 분의 1. 다만,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 만분의 25 로 한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 분의 1. 다만,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 만분의 25 로 한다.

고용보험법 제 15 조 및 제 118 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허위 신고 시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 214 조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합니다.

당부 사항

모든 임직원은 일용근로자 고용 및 보고 시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심스러운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인사팀이나 법무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근로자 생존 확인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활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www.nhis.or.kr)에서 '직장가입자 자격확인서비스'를 이용하여 해당 근로자의 자격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진위확인 서비스: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 진위확인 서비스 (https://www.mois.go.kr/frt/sub/a06/b08/resident/screen.do)를 통해 주민등록번호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 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에서 '자격확인' 서비스를 통해 해당 근로자의 보험 가입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면 확인: 가능한 경우, 일용근로자와 직접 대면하여 신분증을 확인하고, 본인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향후 조치

회사는 이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프로세스를 재검토하고 개선할 예정입니다.

일용근로자 고용 및 보고 절차, 그리고 위에 안내된 확인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니 해당 업무 담당자들은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의 준법 경영과 윤리적 기업 문화 유지를 위해 모든 임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제안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인사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팀 드림

차장 나형동
경영관리본부 인사팀

Mobile: 010-6226-5234 | **Phone:** 02-6150-7122 | **Fax:** 02-6150-7122
Email: nhd@tongyanginc.co.kr
Address: 073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 길 24, 4 층

www.tongyanginc.co.kr